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국토해양부 | | 보도참고자료 | |
| | | 배포일시 | 2008. 3. 27(목) / 총 18 매 |
| 담당 부서 |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| 담당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 장 양준승, 주무관 안효정 • ☎ (02)2110-8097, 8098 lara81@mltm.go.kr |
| 보도일시 | |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
국토해양부 소관 34개 법률 제·개정안 공포

- 국토해양부 소관 34개 법률 제·개정안이 오는 3월 28일자로 일괄 공포됨

- 이번에 공포되는 주요 법률개정안으로는
 - 지자체의 도시계획 자율권을 확대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”,
 -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”,
 - 지방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의 전매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“주택법 개정안”,
 - 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, 사업지구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”
 - 채권보상을 활성화하여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” 등을 들 수 있음

- 34개 제·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시행시기는 붙임을 참조하기 바람

붙임 : 3.28일 공포예정 국토해양부 소관 제·개정법률안(34건) 주요 내용 및 시행시기

3.28일 공포예정 국토해양부 소관 제·개정법률안(34건) 주요내용 및 시행시기

| 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1 | 법률명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개정안)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(시행일 : 공포 즉시) ○ 원인자 부담 실현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 도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행위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 (시행일 :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) | | | |
| 담당과 | 도시정책과 도시규제정비팀 | 연락처 | 2110-8190~6 2110-8219~24 | |

| 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|--|
| 번호 | 2 | 법률명 | 도시개발법(개정안)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대도시 시장에게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 부여(시행일 :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) ○ 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자체·사업시행자·전기공급자간의 갈등 해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개발구역안의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을 전기공급자가 1/2를, 사업시행자가 1/2를 부담토록 규정 보완 (전부환지의 경우 전기공급자 2/3, 사업시행자 1/3 부담) (시행일 : 공포 즉시) | | | |
| 담당과 | 도시재생과 | 연락처 | 2110-8197~9 | |

| 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3 | 법률명 |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(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발부담금 부과 시 산업 간 차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외에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도 개발부담금의 50%를 감면하는 대상에 추가 | | | |
| 담당과 | 토지정책과 | 연락처 | 2110-6242, 8280 | |

| | | | | |
|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|--|
| 번호 | 4 | 법률명 | 주택법(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도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·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폐지 ○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 및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·군 등으로 이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지면적이 10만㎡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 -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 | | | |
| 담당과 | 주택정책과 | 연락처 | 2110-8231~7 | |

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번호 | 5 | 법률명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개정안)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, 사업지구 내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처분과 관련한 조합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이를 공공기관이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○ 주택수요 등에 관한 지역별 특성 고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○ 지역실정을 고려한 신속한 정비사업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시·도지사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| | |
| 담당과 | 주택정비과 | 연락처 | 2110-8266~72 |

| | | | |
|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번호 | 6 | 법률명 |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(개정안)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정비촉진사업의 투명성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 시공자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추천한자로 선정 ○ 장기간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 지구 내 기존학교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감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의 신설뿐만 아니라 노후 학교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 가능 ○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의제된 기존 사업지구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해진 행정행위의 효력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전 법령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사업지구로서 이 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정 의제된 사업지구에서, -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수립, 조합설립인가, 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행위를 거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 | | |
| 담당과 | 주택정비과 | 연락처 | 2110-8266~72 |

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|
| 번호 | 7 | 법률명 | 건축법(개정안)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의 공사감리자 지정 금지 조항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로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 -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* 2008년 1월 7일 폭발·화재로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도 설계·시공·감리를 동일 계열사가 시행 | | |
| 담당과 | 건축기획과 | 연락처 | 2110-8212~8 |

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번호 | 8 | 법률명 | 동·서·남해안권발전 특별법(개정안) |
| 시행일 | '08.6.28부터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·서·남해안권 개발시 일부 규제완화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관과 미관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변 자연과 조화된 해안권으로 개발 - 특별건축구역 제도 및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하고, 개발구역 지정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및 개발구역내 건축물 건축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* 특별건축구역 :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,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** 총괄계획가 :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, 계획 전 과정을 총괄 진행·조정하는 자 | | |
| 담당과 | 지역정책과 | 연락처 | 2110-8162~8 |

| 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9 | 법률명 |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| |
| 시행일 | 공포 즉시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반시설부담금의 주택 분양가 전가로 인한 분양가상승 및 기업부담 가중 등의 폐해를 방지 ○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, 도시계획세 등 조세 및 기반시설부담금을 국민이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중부과 문제 방지 | | | |
| 담당과 | 도시규제정비팀 | 연락처 | 2110- 8219~24 | |

| | | | | |
|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10 | 법률명 |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(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,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유비쿼터스도시 : 도로·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IT기술을 융합한 U-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교통·환경·복지 등 각종 U-서비스를 언제·어디서나 제공하는 도시 -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·도시계획수립, 표준모델, 계획수립 체계, 사업시행 및 관리·운영방안, 기술표준화 및 정보보호 등 지원방안 규정 | | | |
| 담당과 | 도시재생과 | 연락처 | 2110-8199, 8201 | |

| | | | | |
|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번호 | 11 | 법률명 |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개정안) | |
| 시행일 | '08.4.18부터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감축하고 채권보상을 활성화하여 토지 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을 최소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수령하는 보상채권에 대한 금리를 부채지주 보상채권 금리보다 상향화 ○ 보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지방공기업」에 따른 지방공사 등도 보상채권 발행기관에 포함하는 등 발행기관 확대 | | | |
| 담당과 | 토지정책과 | | 연락처 | 2110-8277, 6246 |

| 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번호 | 12 | 법률명 | 한국수자원공사법(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 즉시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단지분양에 따른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 방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의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사 공급토지의 자기 또는 제3자 공급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<p>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</p> | | | |
| 담당과 | 수자원정책과 | | 연락처 | 2110-8404~11 |

| 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13 | 법률명 |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(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 즉시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관리를 시험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| | | |
| 담당과 | 부동산평가과 | 연락처 | 2110-6253~4 | |

| 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14 | 법률명 | 건설기술관리법(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감리협회가 보증사업과 회원에 대한 용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의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, -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 | | | |
| 담당과 | 건설안전과 | 연락처 | 2110-6309~10 | |

| 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15 | 법률명 |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을 원활히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-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지역주민들이 원거리를 왕래해야하는 불편해소 및 도청이전기간 단축, 입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| | | |
| 담당과 | 지역정책과 | 연락처 | 2110-8162~68 | |

| | | | | |
|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16 | 법률명 | 지하수법 |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·이용과 오염예방, 지하수시설에 대한 효과적 관리 도모 - 지하수개발·이용 신고시설의 명의변경, 시설변경 등 변경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500만원 이하에서 경감) - 지하수개발·이용 사후관리관련 종료신고를 허위로 하거나, 시장·군수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| | | |
| 담당과 | 수자원정책과 | 연락처 | 2110-8404~11 | |

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|
| 번호 | 17 | 법률명 | 해외건설촉진법(개정안) |
| 시행일 | 공포 즉시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건설경기 불황으로 급증하고 있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중소기업체에 정보제공, 해외 건설 전문인력 육성·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진출의 리스크 경감 - 우수 해외 중소기업자지정제도 신설 등 우수해외건설업자지정제도 개선 | | |
| 담당과 | 해외건설과 | 연락처 | 2110-6295 |

| | | | |
|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|
| 번호 | 18 | 법률명 |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(개정안)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3개월후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토지신탁계약’에 따라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경우, 분양을 위한 별도의 추가 신탁계약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법률관계를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행법상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경우 사업자가 다시 다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건축물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, 분양사업자는 착공신고 후에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미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사무대리계약 체결 의무 -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전분양에 대한 피분양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것이므로 별도 신탁 계약이 불필요 하여 이점을 명확히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토지신탁 :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 받아 택지조성 및 건축물 조성 등 직접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를 수행하며, 사업부지는 토지소유자의 부도나 파산 등이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음 | | |
| 담당과 | 건축문화팀 | 연락처 | 2110-8228 |

| | | | | |
|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19 | 법률명 |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(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·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- 낙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및 개발(투자)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종 인·허가 의제 등의 절차 간소화 -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, 채무 보증, 국고보조금 지원, 학교·의료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주택공급 특례 등 | | | |
| 담당과 | 지역정책과 | 연락처 | 2110-8162~8 | |

| | | | | |
|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20 | 법률명 | 기업도시개발 특별법(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도시개발 활성화 도모 -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한 것을 기타 회계에서도 전부 또는 일부 지원가능하도록 확대 | | | |
| 담당과 | 기업복합도시과 | 연락처 | 2110-8182~8 | |

| | | | | |
|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번호 | 21 | 법률명 |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 개발·지원 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지 및 산지 전용시 우선협조 · 기반시설설치비용 등 우선지원 · 영구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전용산업단지 우선 지원 ·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분양가나 임대료 등 감면 등 - 지방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○ 중소기업 등에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전용산업단지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전용산업단지 토지의 국고매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마련 -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임대기간은 50년 | | | |
| 담당과 | 산업입지정책과 | | 연락처 | 2110-6180~81 |

| | | | | |
|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번호 | 22 | 법률명 |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(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·시외(고속)버스·도시철도·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등 전반적인 교통수단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교통편의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 수립,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 마련·시행, 대중교통운영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용 장비 설치·운영 등을 의무화 * 현재 교통카드의 통용범위가 지역별·수단별·업체별로 분할되어,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또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 시 불편 야기 | | | |
| 담당과 | 도시광역교통과 | | 연락처 | 2110-6420~21 |

| | | | | |
|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23 | 법률명 |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(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 보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사업용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하는 추가 대인배상 보험(책임보험 초과한도 손해배상보험)에 대하여도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| | | |
| 담당과 | 자동차보상팀 | 연락처 | 031-436-8902 | |

| 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24 | 법률명 | 자동차관리법(개정안)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외에 주요 부품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을 정하고 부품제작자 등이 부품안전성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하도록 함(시행일 :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) ○ 제작사가 공식 리콜하기 전에 소비자가 부담한 정비비용을 제작사가 보상토록 함(시행일 : 공포일로부터 1년 후) ○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와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·실시(시행일 : 공포일로부터 1년 후) | | | |
| 담당과 | 자동차정책과 자동차관리과 | 연락처 | 2110-8694~8695 2110-8698~8704 | |

| 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25 | 법률명 | 한국공항공사법(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항공사의 공항 건설 및 운영경험을 수익증대에 기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공항공사가 연구개발한 장비의 제작·판매·수출, 공항 건설 및 운영사업 등의 국외 수주를 공사사업범위에 추가 ○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현실화 | | | |
| 담당과 | 항공정책과 | 연락처 | 2110- 8755~61 | |

| | | | | |
|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26 | 법률명 | 수상레저안전법(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즉시, 일부는 '08.7.1부터 |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상레저 조종면허자가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기간 동안 면허갱신이 불가능한 경우, 기간 전에 미리 받거나 연기가 가능하게 함 ○ 모터보트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함으로써 공신력을 갖도록 하고 법원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, 압류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○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 및 내수면에 대한 안전관리지침을 정하고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연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, 해양경찰청장이 안전관리계획의 시행 상태를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함 | | | |
| 담당과 |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 | 연락처 | 032-835-2255 | |

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|
| 번호 | 27 | 법률명 | 주차장법(개정안) |
| 시행일 | 공포 즉시 | | |
| 주요 내용 | <p>○ 경형자동차의 규격을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에서 1000cc 미만의 자동차로 변경하여 기준을 자동차관리법령과 동일하게 정비</p> <p>*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경형자동차의 규격이 2008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변경</p> | | |
| 담당과 | 도시광역교통과 | 연락처 | 2110-6420~21 |

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|
| 번호 | 28 | 법률명 |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개정안) |
| 시행일 | '08.7.14부터 | | |
| 주요 내용 | <p>○ 무면허 유상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벌칙대상에 화물자동차·특수자동차·이륜자동차를 추가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</p> | | |
| 담당과 | 대중교통과 | 연락처 | 2110-8669~75 |

| | | | |
|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|
| 번호 | 29 | 법률명 | 도시교통정비 촉진법(개정안) |
| 시행일 | '09.1.1부터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지에정인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·시행하여 환경·교통·재해·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·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복을 방지 ○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의 분석·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대체하고, 대상지역·심의방법등을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제적·시간적 부담을 완화 | | |
| 담당과 | 교통복지과 | 연락처 | 2110-8683~9 |

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번호 | 30 | 법률명 | 인천국제공항공사법(개정안)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밀누설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강화하여 다른 법률과 처벌 수위를 맞춤 ○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| | |
| 담당과 | 항공정책과 | 연락처 | 2110-8755~61 |

| 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31 | 법률명 | 사설철도 주식회사 주식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| |
| 시행일 | 공포 즉시 | | | |
| 주요 내용 | <p>○ 현재의 입법부작위 위헌 결정에 따라 제정된 이 법상 청구기간(2002.6.30일 까지)내에 보상청구한 자에 대한 보상 등 관련 업무가 종료되어 법 폐지</p> <p>* 헌법재판소는 「조선철도의 통일(1946년 5월 7일 군정법령 제75호)」에 따라 국가에 수용된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절차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위헌 결정(1994. 12. 29)</p> | | | |
| 담당과 | 철도운영과 | 연락처 | 2110-8798~8805 | |

| | | | | |
|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번호 | 32 | 법률명 |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(개정안) |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| | | |
| 주요 내용 | <p>○ 항공기에 대한 안전을 강화</p> <p>- 운항 중뿐만 아니라 공항에 계류 중에도 기내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함</p> | | | |
| 담당과 | 항공안전본부 | 연락처 | 2669) 6370~6376 | |

| | | | |
|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|
| 번호 | 33 | 법률명 | 철도사업법(개정안)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철도사업자의 경영자율성 향상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철도사업의 경쟁력 확보 - 여객운임 외에 철도여객요금 및 화물운임요금 상한제(上限制) 폐지 | | |
| 담당과 | 철도운영과 | 연락처 | 2110-8848 |

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|
| 번호 | 34 | 법률명 | 교통체계효율화법(개정안) |
| 시행일 |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| | |
| 주요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·철도 등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종합적인 교통시설투자의 방향을 포함 ○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교통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시행하는 개별교통조사 간의 중복 방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효율적인 교통조사 및 조사결과의 공동활용 등을 위해 5년 단위 국가교통조사계획 수립 | | |
| 담당과 | 종합교통정책과 | 연락처 | 2110-8651~8 |